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 1 부
일반 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또는 특정 기준들은 그 호 또는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의 요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 기준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의 차원에서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적시된 경우, 원산지 기준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라. 호 또는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상 선택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선택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 마. 단일 원산지 기준이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그 기준이 호 변경이나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지정된 군 내의 다른 호 또는 소호를 포함하여, 각 경우에 맞게, 다른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준이 “그 군 외의” 호 또는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기준에 규정된 호 또는 소호 군 외의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기준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 사.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하여,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부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소호라 함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제 2 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제1류-제5류)
제1류	산 동물
0101-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101호 내지 제0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류	육과 식용설육
0201 - 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의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제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제3류 주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은 비원산지 치어 ¹ 또는 자어로부터 양식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된다. 주 ¹ : 치어라 함은 후기자어기에 있는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0301-0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301호 내지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류	낙농품, 조란, 천연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401-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901.90호 및 제2106.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401호 내지 제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0501-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501호 내지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제14류)
제2부 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및 원예상품은 비 당사국에서 수입한 씨앗, 인경, 균경, 삽수, 접목, 짹, 봉오리 또는 기타 산 식물의 일부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된다.
제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601-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601호 내지 제0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701-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701호 내지 제0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801호 내지 제08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류	커피·차·마태 및 향신료
0901.11 -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11호 내지 제09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1.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901.2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0901.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2 - 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2호 내지 제0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4.11 - 0904.12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 되지 아니한 향신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4.11호 내지 제0904.12호에 해당하는 향신료 혼합물 또는 그 밖의 상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된 것
0904.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05-0909	제0905호 내지 제090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 되지 아니한 향신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5호 내지 제090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05호 내지 제0909호에 해당하는 향신료 혼합물 또는 그 밖의 상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된 것
0910.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1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0910.20 - 0910.99	제0910.20호 내지 제0910.9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되지 아니한 향신료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10.20호 내지 제0910.99호에 해당하는 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0910.20호 내지 제0910.99호에 해당하는 향신료 혼합물 또는 그 밖의 상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화된 향신료를 제외한다)으로 변경된 것
제10류	곡물
1001-10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001호 내지 제1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전분·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2-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2호 내지 제1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70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106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106호 내지 제1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1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201호 내지 제1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류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11 - 130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11호 내지 제130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20 - 1302.3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20호 내지 제1302.3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302.39	제1302.39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39호 카라기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1302.39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중량으로 그 상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302.3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제14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1401-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401호 내지 제1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제15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1501-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01호 내지 제15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21-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521호 내지 제15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제24류)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1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1호 내지 제1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4.11 - 1604.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4.11호 내지 제1604.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4.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3류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604.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4.15 - 16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604.15호 내지 제16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605	다른 류의 물품에서 제1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1701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1호 내지 제1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1호 내지 제1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3 - 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3호 내지 제1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건조 중량으로 설탕을 9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포함할 수 없으며, 건조 중량으로 설탕을 90퍼센트 미만 포함하는 제1806.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중량으로 35퍼센트 이하 포함한 것에 한한다.
1806.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806.31 - 1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806.31호 내지 제18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9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 · 제1103.20호 · 제1104.19호 ·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제1901.1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 · 제1103.20호 · 제1104.19호 ·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버터지를 중량으로 25퍼센트 초과 포함하며 소매용이 아닌 제1901.2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 제1102.30호 및 제1103.19호 · 제1103.20호 · 제1104.19호 ·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에 해당하는 쌀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우유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 19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2호 내지는 제19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4.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19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주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 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2001 - 20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0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1호 내지 제2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2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8.19 - 2008.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008.19호 내지 제20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11 -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41 - 2009.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41호 내지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0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009.11호 내지 제2009.3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009.8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쥬스를 제외한다)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크랜베리 쥬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으로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으로 45퍼센트 이상,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0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009.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쥬스 성분 또는 쥬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2101-21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1호 내지 제21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2103.20호에 해당하는 토마토 케첩은 제2002.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3.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 내지 제0405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낙농조제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6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805호, 제2009호 또는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의 농축쥬스로 변경된 것</p> <p>다음으로부터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쥬스로 변경된 것:</p> <p>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202.90호에 해당하는 혼합쥬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또는</p> <p>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1류 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혼합쥬스.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의 단일 과실 또는 채소쥬스 또는 쥬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3호 내지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17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당시rix으로 변경된 것,</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낙농조제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과실을 중량으로 20퍼센트 초과 포함하고 젤라틴에 넣은 과실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인삼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제22류	음료·알코올 및 식초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2.90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농축쥬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 쥬스로 변경된 것</p> <p>다음으로부터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비타민 또는 무기질로 강화된 혼합쥬스로 변경된 것: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혼합쥬스, 제0805호 또는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또는 나.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제22류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 제2009호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2106.90호에 해당하는 혼합쥬스. 다만, 하나의 비당사국에서 생산된 단일 과실 또는 채소쥬스 또는 쥬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퍼센트 이하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4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우유 고형분을 중량으로 10퍼센트 초과 포함하는 낙농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우유가 포함된 음료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와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인삼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2.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2203-22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3호 내지 제2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6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6호에 해당하는 청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22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8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8.90에 해당하는 소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106.90호에 해당하는 알콜성 합성 조제품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2208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301-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1호 내지 제2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3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401호 내지 제0405호 또는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3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4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또는 제2401호에 해당하고 제맥분리공정 또는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래퍼담배에서, 또는 제2403호에 해당하고 래퍼담배로 사용되기 적합한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에서 제24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주	<p>아래에 규정된 연간 수량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제2401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담배를 포함하고 있는 제2402.20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취급한다. 다만,</p> <p>가. 미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제2401호에 해당하는 잎담배가 그러한 상품에 포함된 담배 중 중량으로 3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p> <p>나. 제2401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잎담배가 그러한 상품에 포함된 담배 중 중량으로 60퍼센트 이상을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p> <p>7년차에 규정된 수량 제한은 그 후의 모든 연도에 적용된다.</p> <table> <thead> <tr> <th>연도</th> <th>수량(백만 개피)</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100</td> </tr> <tr> <td>2</td> <td>1,350</td> </tr> <tr> <td>3</td> <td>1,600</td> </tr> <tr> <td>4</td> <td>1,850</td> </tr> <tr> <td>5</td> <td>2,100</td> </tr> <tr> <td>6</td> <td>2,300</td> </tr> <tr> <td>7</td> <td>2,500</td> </tr> </tbody> </table>	연도	수량(백만 개피)	1	1,100	2	1,350	3	1,600	4	1,850	5	2,100	6	2,300	7	2,500
연도	수량(백만 개피)																
1	1,100																
2	1,350																
3	1,600																
4	1,850																
5	2,100																
6	2,300																
7	2,500																
240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3.91호에 해당하는 시가 걸잎용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403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p>																
제5부	광물성 생산물(제25류-제27류)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석회와 시멘트																
2501 - 2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01호 내지 제2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10 - 251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7.10호 내지 제251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7.41 - 2517.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7.41호 내지 제2517.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18 - 2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18호 내지 제25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524 - 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524호 내지 제2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6류	광·슬랙 및 희																

2601 - 2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7류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중류물, 역청물질 및 광물성 왁스
주	<p>이 류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문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문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 <p>제2710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의 지위를 부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압증류법: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된 후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나. 감압증류법: 문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
2701-2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1호 내지 제27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07.10 - 2707.9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7.10호 내지 제27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7.10호 내지 제27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 반응 결과로 인해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p>
2708-27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08호 내지 제27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0	<p>제2710호에 해당하는 다른 상품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의 결과로 인해 변경된 상품에 한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2711.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12 - 2711.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12호 내지 제271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2711.12호 내지 제271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71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712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712호 내지 제27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 제38류)
주1	제6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7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부가가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p>화학 반응 원산지</p> <p>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23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주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문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문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규칙 2	<p>정제</p> <p>정제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p> <p>가.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p> <p>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
규칙 3	<p>혼합 및 배합</p> <p>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제3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4	<p>입자 크기의 변화</p> <p>제30류, 제31류 또는 제33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 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5	<p>표준 물질</p> <p>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표준 물질의 생산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이 규칙의 목적상, '표준물질'(표준 용액을 포함한다)은 제조자에 의해 보증된 정확한 순도 또는 비율을 가진 것으로 분석, 검정, 또는 참조용에 적절한 조제품을 말한다.</p>
규칙 6	<p>이성체 분리</p> <p>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7	<p>분리 금지</p> <p>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제28류 내지 제38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유리된 물질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을 거치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제28류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희토류금속·방사성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2801 - 2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1호 내지 제28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09.10 - 2809.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09.10호 내지 제28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810 - 28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810호 내지 제285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9류	유기화학품
2901.10 - 2901.2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1.10호 내지 제29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02 - 293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02호 내지 제293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36.10 - 294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36.10호 내지 제29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294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94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0류	의료용품
3001.10 - 30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1.10호 내지 제3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0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005.10 – 300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005.10호 내지 제300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1류	비료
3101 – 3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101호 내지 제3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2류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그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기타 착색제, 페인트와 바니시, 퍼티와 기타 매스틱 및 잉크
3201.10 – 32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1.10호 내지 제32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4.11 – 32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1호 내지 제32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6.11 – 320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6.11호 내지 제320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07 – 32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7호 내지 제3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3 – 3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3호 내지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용품류
3301.11 – 33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1.11호 내지 제33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3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302 – 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302호 내지 제3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세제·조제윤활제·인조왁스·조제왁스·광택 또는 연마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 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401호 내지 제3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3501.10 – 35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1.10호 내지 제35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2.11 – 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0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502.11호 내지 제35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2.20 – 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2.20호 내지 제35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3 – 3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3호 내지 제3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1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6류	화약류·화공품·성냥·발화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 3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601호 내지 제3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7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01 – 3703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701호 내지 제3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704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704호 내지 제3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1호 내지 제3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08.10 – 38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8.10호 내지 제38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총 유효성분(들)이 중량으로 50퍼센트 이상 원산지 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3809 –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809호 내지 제382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8류 내지 제37류, 제40류, 또는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382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 제40류)
주1	제7부의 규칙 1 내지 규칙 5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이 부의 류 또는 호에 해당하는 상품은 그러한 규칙에서 달리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주2	주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부의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규칙 1	<p>화학 반응</p> <p>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산된 제39류 및 제40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 반응'이란 문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문자내 결합 생성에 의하거나 문자에서 원자의 공간배열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구조를 가진 문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원산지 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반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침가 또는 제거</p>
규칙 2	<p>혼합 및 배합 원산지</p> <p>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리 결정된 명세서에 따라 재료의 의도적이고 비율이 통제되는 혼합 또는 배합(분산을 포함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투입재료와 다르고 그 상품의 목적 또는 용도와 관련된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상품이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3	<p>정제</p> <p>정제된 제39류 및 제40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그 정제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다음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p> <p>가. 기존 불순물의 80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 또는 나. 불순물의 감소 또는 제거 결과로 다음에 적합한 상품이 된 경우: 1) 의약용, 의료용, 화장품용, 수의용, 또는 식용 물질 2) 분석, 진단, 또는 실험실용 화학제품 또는 시약 3) 미량요소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또는 성분 4) 특수 광학용 5) 건강과 안전을 위한 무독성용 6) 생명공학용 7) 분리공정에 사용되는 캐리어, 또는 8) 핵등급용</p>
규칙 4	<p>입자 크기의 변화</p> <p>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은 의도적이고 통제된 상품의 입자크기의 변형(중합체 용해와 그 후의 침전에 의한 미소화를 포함하고 단순 분쇄 또는 압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이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여, 그 결과 결과물의 목적에 관련된 정의된 입자 크기, 정의된 입자크기 분포 또는 정해진 표면적을 가지면서 투입재료와 다른 본질적인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을 가진 상품으로 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규칙 5	<p>이성체 분리</p> <p>제39류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이성체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 3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916 – 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16호 내지 제392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1.10호 내지 제40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002 – 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2호 내지 제4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 또는 제4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 가치 발생이 공제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007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부	원피·가죽·모피 및 이들의 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1류 – 제43류)
제41류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4101.20 – 41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1.20호 내지 제41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3.20 – 41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3.20호 내지 제4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4.11 – 4104.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4.11호 내지 41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2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 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제4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05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5.10호에 해당하는 웨트블루에서 제4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3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에 해당하는 웨트블루에서 제4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2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제4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5.10호의 웨트블루에서 제4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4103호에 해당하는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제4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4106.21호, 제4106.31호 또는 제4106.91호의 웨트블루에서 제4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114.10 – 4115. 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114.10호 내지 제411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2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4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1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1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19 – 4202.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19호 내지 제4202.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2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2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29 – 4202.3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29호 내지 제4202.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3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3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39 – 4202.9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39호 내지 제4202.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2.92	외부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인 상품에 대해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9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4202.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203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203호 내지 제4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3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3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302 – 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302호 내지 제4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제44류 – 제46류)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01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401호 내지 제44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5류	코르크와 그 제품
4501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501호 내지 제45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6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 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46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6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0부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제47류 – 제49류)
제47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4701 – 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701호 내지 제4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8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펠트, 지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 48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801호 내지 제48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4808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808호 내지 제48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 문서 및 도면
4901 – 4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4901호 내지 제4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50류 – 제63류)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제64류 – 제67류)
제64류	신발류, 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제6401호 내지 제6405호 및 제64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제6401.10호 또는 제6401.91호 또는 항목 6401.92aa, 6401.99aa, 6401.99bb, 6401.99cc, 6402.30aa, 6402.30bb, 6402.30cc, 6402.91aa, 6402.91bb, 6402.91cc, 6402.99aa, 6402.99bb, 6402.99cc, 6404.11aa 또는 6404.19aa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² . 다만 집적법으로 역내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4류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주 ² : 부록 6-가-1의 상관관계표 참조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501호 내지 제65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3 – 6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6503호 내지 제6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6503호 내지 제6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5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6류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6601 – 6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601호 내지 제6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7류	조제우모와 새의 솜털 및 우모와 새의 솜털로 만들어진 제품, 조화, 인모제품
6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6701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에서 제6701호에 해당하는 우모 또는 새의 솜털 제품 으로 변경된 것
6702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702호 내지 제67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 제70류)
제68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01호 내지 제68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2.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2.60 – 68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2.60호 내지 제68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6813 – 6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813호 내지 제68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69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901호 내지 제69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1호 내지 제7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3 – 7007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3호 내지 제7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09 – 7018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07호 내지 제70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009 호 내지 제70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019	부속서 4-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제71류)

제71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2 – 71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2호 내지 제71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4 – 7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4호 내지 제71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6 – 71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6호 내지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0 – 7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0호 내지 제7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4 – 7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4호 내지 제71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1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117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117호 내지 제71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5부	비금속 및 비금속 제품들(제72류~제83류)
제72류	철강
7201 – 7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1호 내지 제72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4 – 72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4호 내지 제7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6 – 7207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6호 내지 제72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208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208호 내지 제7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 7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1호 내지 제7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730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4.41호에 해당하는 외경 19밀리미터 미만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7308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216호에 해당하는 형강에 행하여진 다음 공정의 결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낫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다. 취급목적을 위한 부착공정</p> <p>라.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에 추가되는 용접, 결합 또는 부착공정. 단, 용접, 결합, 또는 부착물의 최대 크기는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랜지 안쪽 면 사이의 크기보다 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p> <p>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또는 바.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낫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합하여 보강재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p>
7309 – 7311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09호 내지 제7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2 – 7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2호 내지 제73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5.11 – 7315.1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11호 내지 제73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11호 내지 제731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5.20 – 7315.8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20호 내지 제7315.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20호 내지 제7315.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3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3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19 –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19호 내지 제7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1.11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단, 조립여부와 관계없이 가열실(cooking chambers), 조정장치(controls) 또는 버너(burners)를 갖춘 것과 관계없이 상판(upper panels) 또는 다음의 구성 부품을 하나를 초과하여 포함하는 도어 조립체(door assemblies)의 것은 제외한다: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내부패널(inside panel), 외부패널(external panel), 투시창(window) 또는 절연체(isolation)],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7321.12 – 7321.8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2호 내지 제7321.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12호 내지 제7321.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7321.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73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2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3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4.10 – 7324.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4.10호 내지 제7324.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5.10 – 7326.2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325.10호 내지 제7326.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3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325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73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4류	동과 그 제품
7401 – 7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1호 내지 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4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두께 5밀리미터 미만의 제7409호에 해당하는 판, 쉬트 또는 스트립을 제외한다)에서 제7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411 – 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411호 내지 제7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 7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1호 내지 제75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750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에서 두께 0.1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박으로 변경된 것. 다만, 두께가 50퍼센트 이상 감소된 것에 한한다.
7507.11 – 75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507.11호 내지 제75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 7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1호 내지 제76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5호 내지 제7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6.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 내지 제7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6.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6.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6.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604호 내지 제7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7606.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7.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7.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07.19 – 7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7.19호 내지 제7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7608 – 7609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08호 내지 제7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0 – 76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0호 내지 제76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616.91 – 7616.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616.91호 내지 제761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8류	연과 그 제품
7801 – 78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801호 내지 제78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 79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1호 내지 제7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90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9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7904 – 79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7904호 내지 제79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 80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1호 내지 제8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0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0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006 – 8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006호 내지 제8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1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1.10 – 8101.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10호 내지 제8101.9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1.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101.9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101.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1.97 – 8101.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1.97호 내지 제81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2.10 – 8102.95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2.10호 내지 제8102.9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2.96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102.9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102.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2.97 – 810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2.97호 내지 제810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3.20 – 8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3.20호 내지 제81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07.20 – 810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7.20호 내지 제81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8.20 – 8108.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8.20호 내지 제810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8.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09.20 – 81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09.20호 내지 제81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12.12 – 811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12호 내지 제811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2.21 – 8112.5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21호 내지 제8112.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112.9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2.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1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1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불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1 – 8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1호 내지 제82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1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209호 또는 제82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서 제820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207.19 – 8207.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19호 내지 제8207.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40 – 8207.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40호 내지 제8207.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208 – 821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08호 내지 제82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211.9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211.91호 내지 제8211.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1.10 – 8301.4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10호 내지 제83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301.6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10호 내지 제83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1.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1.60 – 8301.7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1.60호 내지 제8301.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2 – 8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2호 내지 제8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5.10 – 8305.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5.10호 내지 제83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5.10호 내지 제830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6.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6.21 – 83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6.21호 내지 제83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8.10 – 8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8.10호 내지 제83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8.10호 내지 제83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09 – 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09호 내지 제8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311.10 – 83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11.10호 내지 제83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11.10호 내지 제831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3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84류 – 제85류)
제84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1.10 – 8401.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1.10호 내지 제8401.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1.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02.90호에서 제840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40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4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02.90호에서 제8402.19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40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4.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81 – 8406.8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81호 내지 제8406.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07.10 – 8407.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10호 내지 제8407.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7.31 – 8407.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31호 내지 제8407.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09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퍼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8410.11 – 8410.13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11호 내지 제8410.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1.11 – 8411.8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11호 내지 제84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2.10 – 841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10호 내지 제841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3.11 – 8413.8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11호 내지 제8413.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3.91 –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3.91호 내지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13.9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15.10 – 8415.8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10호 내지 제8415.8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15.90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포함한 그 밖의 상품에서 제8415.90호의 새시(chassis), 새시 블레이드(chassis blades) 그리고 외부 캐비닛(cabinets)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6.10 – 841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6.10호 내지 제84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7.10 – 841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10호 내지 제841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10 – 8418.6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18.9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18.10호 내지 제8418.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8.91 –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8.91호 내지 제841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9.11 – 8419.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11호 내지 제8419.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0.91 –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0.91호 내지 제 842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1.11 – 8421.3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11호 내지 제8421.3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1.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2.11 – 842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11호 내지 제842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23.10 – 8423.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10호 내지 제842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24.10 – 8430.6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24.10호 내지 제8430.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31.10호, 제8431.31호, 제8431.39호, 제8431.43호 또는 제8431.49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32.10 – 843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2.10호 내지 제843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8.10 – 843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10호 내지 제843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39.10 – 844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39.10호 내지 제844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1.10 – 844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10호 내지 제844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2.10 – 8442.3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10호 내지 제844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2.40 –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2.40호 내지 제8442.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3.11 – 8443.5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4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43.11호 내지 제8443.5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4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5 – 8447	이 상품군 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5호 내지 제844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8.11 – 8448.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8.11호 내지 제8448.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8.20 –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8.20호 내지 제8448.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0.11 – 845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11호 내지 제845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10 – 845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10호 내지 제845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2.10 – 8452.2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10호 내지 제8452.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2.30 – 8452.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30호 내지 제845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3.10 – 8453.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10호 내지 제845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4.10 – 8454.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10호 내지 제845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5.10 – 845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5.10호 내지 제845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57 – 846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57호 내지 제846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5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55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8464 – 846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4호 내지 제846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67.11 – 8467.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11호 내지 제8467.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7.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7.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7.92 –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67.92호 내지 제846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8.10 – 8468.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10호 내지 제8468.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9.11 – 8469.1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9.11호 내지 제8469.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69.20 – 8469.3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69.20호 내지 제8469.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0.10 – 847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0.10호 내지 제847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3.10 – 8473.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3.10호 내지 제847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퍼센트 이상
8474.10 –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4.10호 내지 제847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47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5.21 – 8475.2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21호 내지 제847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6.21 – 8476.8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21호 내지 제8476.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7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7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7.10호 내지 제847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78.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79.10 – 847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79.10호 내지 제847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1.10 – 8481.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10호 내지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2.10 – 8482.80	<p>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p>
8482.91 –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91호 내지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8483.40 – 8483.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제8482.99호, 제8483.10호 내지 제8483.40호, 제8483.60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3.40호 내지 제848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 제8482.99호, 제8483.10호 내지 제8483.40호, 제8483.60호 또는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40호 내지 제8483.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이상
848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4.10 –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4.10호 내지 제848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48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10호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01.20 – 8501.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1.20호 내지 제8501.6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2 –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2호 내지 제85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4.10 – 8504.2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4.10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04.10호 내지 제8504.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04.90호에서 제8504.31호에 해당하는 물품 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504.32 – 850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04.10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 8504.32호 내지 제8504.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5.11 – 850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11호 내지 제8505.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10 – 850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10호 내지 제8506.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50 – 8506.8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50호 내지 제850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 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507.20 – 850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20호 내지 제850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09.10 –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10호 내지 제85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10호 내지 제8509.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0.10 - 8510.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10호 내지 제85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10- 85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10호 내지 제85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2.10 - 8512.2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10호 내지 제85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4.10 - 8514.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10호 내지 제8514.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5.11 - 8515.8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11호 내지 제85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10 - 8516.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10호 내지 제8516.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7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7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7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16.90호의 토스터용 하우징 또는 제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16.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6.90호의 토스터용 하우징 또는 제903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7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7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7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7.11 - 851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7.11호 내지 제851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8.10 - 8518.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10호 내지 제851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18.10호 내지 제851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18.2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8.29호 또는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18.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18.29 - 8518.5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29호 내지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18.29호 내지 제851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10 - 85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10호 내지 제8519.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92 - 8519.93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92호 내지 제8519.9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1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1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0.10 - 8520.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0.10호 내지 제852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0.32 - 8520.33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0.32호 내지 제8520.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0.39 - 8520.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0.39호 내지 제852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1.10 - 8524.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1.10호 내지 제8524.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25.2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5.20 - 8525.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5.20호 내지 제8525.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6.10 - 852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6.10호 내지 제85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8.12	<p>디지털 미세거울장치가 포함된 제8529.90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또는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13.80호 또는 제85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4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페센트 이상</p>
8528.1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8.21	<p>디지털 미세거울장치가 포함된 제8529.90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또는 그 밖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13.80호 또는 제85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28.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4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페센트 이상</p>
8528.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8.2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28.30	<p>디지털 미세거울장치가 포함된 제8529.90호의 평판 스크린 조립품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13.80호 또는 제8529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29.90호 또는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p> <p>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4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페센트 이상</p>
852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제8529.90호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8530.10 – 8530.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10호 내지 제8530.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1.10 – 853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10호 내지 제85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10 -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2.10호 내지 제8532.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10 - 8533.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3.10호 내지 제8533.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페센트 이상
8535.10 - 853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5.10호 내지 제853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7 -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7호 내지 제853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9.10 - 8539.49	8539.10-8539.4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10호 내지 제8539.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3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011.20호 또는 제8540.9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40.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40.91호 내지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0.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540.40 - 8540.60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40호 내지 제854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71 - 854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71호 내지 제854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0.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0.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변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1.10 – 8542.90	제8541.10호 내지 제8542.90호의 장착되지 아니한 칩, 웨이퍼 또는 디아이스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1.10호 내지 제8542.90호의 조립된 반도체 디바이스, 집적회로 또는 초소형 조립회로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1.10호 내지 제8542.90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변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퍼센트 이상
8543.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543.11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854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20 – 8543.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20호 내지 제8543.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40 – 8543.89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40호 내지 제8543.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7408호, 제7413호, 제7605호, 또는 제7614호 및 제8544.11호 내지 제8544.6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544.20호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544.11호 내지 제8544.60호 또는 제7408호, 제7413호, 제7605호, 또는 제76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30 - 854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4.30호 내지 제8544.4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51 - 8544.59	어떤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51호 내지 제8544.5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4.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4.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4.7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5.11 - 854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545.11호 내지 제854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7.10 - 8547.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7.10호 내지 제854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54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7부	제17부 -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 제89류)
제86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1호 내지 제86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3 - 8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603호 내지 제8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607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3호 내지 제86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8607.11 - 8607.12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11호 내지 제8607.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7.19	<p>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의 부분품에서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축의 부분품 또는 차륜의 부분품에서, 차축이 갖추어진 여부와 관계없이,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차륜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35페센트 이상
8607.21 - 860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7.21호 내지 제8607.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608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608호 내지 제86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7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1 - 8706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페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페센트 이상
8707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페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페센트 이상
8708.10 - 8708.99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10호 내지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5페센트 이상, 또는 다. 순원가법 35페센트 이상
8709.11 - 8709.1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9.11호 내지 제8709.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제8709.11호 내지 제8709.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적법 4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페센트 이상
8709.9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집적법 4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페센트 이상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1 – 8713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714.11 – 8714.96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11호 내지 제8714.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11호 내지 제8714.9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p>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4.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716.10 – 8716.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10호 내지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10호 내지 제8716.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1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10 – 880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1.10호 내지 제88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804 – 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804호 내지 제88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구조물
8901 – 8902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1호 내지 제8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1호 내지 제890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8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8904 - 8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4호 내지 제8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4호 내지 제89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8906 – 89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906호 내지 제89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 제92류)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7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700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001.20 – 90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1.20호 내지 제90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2.11 – 90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2.11호 내지 제9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2.11호 내지 제90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003.11 – 9003.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3.11호 내지 제90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11호 내지 제9003.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4.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0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40호 또는 제9001.5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5.80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1호 내지 제9002호 또는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6.10 - 9006.69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10호 내지 제9006.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10호 내지 제9006.6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6.91 -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6.91호 내지 제9006.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7.11 - 9007.2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11호 내지 제90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11호 내지 제90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7.91 - 9007.92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7.91호 내지 제9007.9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제9007.92호의 경우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8.10 - 9008.4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10호 내지 제900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10호 내지 제900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p>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9.1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09.12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009.9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9009.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09.91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009.21 - 9009.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09.21호 내지 제9009.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0.10 - 9010.6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10호 내지 제901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10호 내지 제9010.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1.10 - 9011.8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10호 내지 제90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10호 내지 제90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2.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3.10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01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4.10 - 90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10호 내지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10호 내지 제90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5.10 -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10호 내지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10호 내지 제901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17.10 - 90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17.10호 내지 제902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2.14 - 902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2.14호 내지 제902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4.10 - 902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10호 내지 제902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10호 내지 제902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5.11 -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11호 내지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11호 내지 제9025.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6.10 - 902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6.10호 내지 제9026.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7.10 - 902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10호 내지 제902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10호 내지 제9027.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7.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8.10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10호 내지 제9028.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8.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29.10 - 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10호 내지 제902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10호 내지 제902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10 - 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10호 내지 제9030.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0.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1.10 - 90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그 밖의 상품(제9031.49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베이스와 프레임을 제외한다)에서 제9031.49호 에 해당하는 좌표측정기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10호 내지 제903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2.10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 내지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10호 내지 제9032.8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0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9101.12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101.19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페센트 이상</p>
9101.2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페센트 이상</p>
9101.29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페센트 이상</p>
9101.91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p>
9101.99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1.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페센트 이상</p>
9102 - 9107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2호 내지 제9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08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2호 내지 제91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p> <p>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페센트 이상</p>

9108 - 9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8호 내지 제9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08호 내지 제9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111.10 - 9111.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10호 내지 제91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10호 내지 제9111.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1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0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0페센트 이상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113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113호 내지 제911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2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 9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1호 내지 제9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1호 내지 제92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20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19부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제93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 93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1호 내지 제9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1호 내지 제930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306 - 9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306호 내지 제93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0부	잡품 (제94류-제96류)
제94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940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1.30 -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1.30호 내지 제94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2.10 - 9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2.10호 내지 제9402.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4.10 - 9404.3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4.10호 내지 제9404.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4.90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참조
9405.10 - 9405.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405.91호 내지 제9405.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10호 내지 제9405.6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405.91 - 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5.91호 내지 제9405.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4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95류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1.00 - 95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1.00호 내지 제950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506 - 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6호 내지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506.3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506.3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제96류	잡품
9601 -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1호 내지 제960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6.21 - 9606.2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21호 내지 제9606.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21호 내지 제9606.2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6.3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7.11 - 9607.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7.11호 내지 제96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7.11호 내지 제9607.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7.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8.10 - 96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10호 내지 제96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8.60호 내지 제96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10호 내지 제9608.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역내부가가치가 30퍼센트이상 발생한 것에 한한다.

9608.31 - 9608.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31호 내지 제960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8.60호 내지 제96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 에서 제9608.31호 내지 제9608.5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608.60 -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8.60호 내지 제96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09.10 - 96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9.10호 내지 제96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09.2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09.10호 내지 제96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610 - 9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0호 내지 제961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2.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2.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3.10 - 9613.8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10호 내지 제96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10호 내지 제9613.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9614.90호의 것을 제외한다)에서 제9614.2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 된 것
96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4.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5.11 - 96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5.11호 내지 제96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96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5.11호 내지 제9615.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35페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45페센트 이상
96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5.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61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21부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제97류)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10 - 97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701.10호 내지 제9701.90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9702 - 9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9702호 내지 제97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